

UN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6)

전쟁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 목 차

	문 단
머리말 .....	1 - 5
I. 정의 .....	6 - 10
II. 역사적 배경 .....	11 - 44
A. 총론 .....	11 - 22
B. 징집 .....	23 - 31
C. 위안소 상태 .....	32 - 44
III. 특별보고관의 조상방법 및 활동 .....	45 - 51
IV. 증언 .....	52 - 65
V.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	66 - 76
VI.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	77 - 90
VII. 일본 정부의 입장 .....	91 - 124
IX. 도의적 책임 .....	125 - 135
X. 권고 .....	136 - 140
A. 국가적 차원에서 .....	137
B. 국제적 차원에서 .....	138 - 140

부록: 특별보고관 임무 중 참고한 주요 인물/조직 목록

## 머리말

1.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초대를 받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광범위한 틀 속에서 전시하 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그 원인 및 결과를 심층 연구하기 위해, 1995년 7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서울을, 1995년 7월 22일부터 27일 사이에 도쿄(東京)를, 각각 방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를 받아, 특별보고관은 같은 문제에 대해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평양도 방문하려고 했다. 그러나, 1995년 7월 25일자 편지에서 동 정부에 연락한대로, 특별보고관은, 항공편 연결이 지연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2. 같은 편지에서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영남 외교부장에게,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평양을 예정대로 방문하여, 특별보고관을 대신하여 수령한 상세한 모든 정보, 자료 및 문서를 특별보고관에게 전해준 인권센터(Centre for Human Rights)의 대표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보증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쌍방에게 편리한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1995년 8월 16일자로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준비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인권센터의 대표에게 건네준 정보, 자료 및 문서를 주의깊게 연구하고 고려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유연한 태도와 협력에 감사드린다.

3.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및 일본 정부의 협력과 원조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양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입수하고, 관계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4. 방문해서 정부대표 및 NGO대표와 협의를 통해 상세한 토론을 할 수 있었고, 또 전시하군 성노예제의 여성피해자와 면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의 요구와 관계 정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 특별보고관은 어떤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이고, 당면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지금 취해져야 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5.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주제에 관한 논의가, 조선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위안부” 피해자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별보고관은 재정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모든 관계국의 생존피해자를 방문할 수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I. 정 의

6. 특별보고관은, 전시하 군대에 의해 또는 군대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제당한 여성의 사례를 군 성노예제의 관행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서 밝혀두고자 한다.

7.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도쿄 방문 중에 표명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26년의 노예제협약(Slavery Convention) 제1조 (1)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붙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라고 정의되는 “노예제”라는 용어를, 현행 국제법의 조항 아래에서 “위안부”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8.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위안부”의 관행은, 관련 국제인권기구 및 제도에 의해 채용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의 명백한 사례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소수집단의 차별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가 1993년 8월 15일의 결의 1993/24에서,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송부한 전시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의 강제노동의 형태에 관한 정보에 유의하고,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심층 연구를 하도록, 소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에게 의뢰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위원회는,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보상 및 재활의 권리에 관해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된 정보 - “위안부”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를 이 연구를 준비할 때 고려에 넣도록 요청했다.

9.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제20회기에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여성의 성노예”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환영하면서, 일본 정부가 행정심사회를 설치함으로써 “노예와 같은 처우”에 유사한 관행을 해결하도록 권고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10. 마지막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관해, 특별보고관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위원, NGO대표 및 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견해, 즉 “위안부”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이 전시에 강제 매춘과 성폭력을 겪으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 즉 연일 거듭되는 강간과 심각한 육체적 학대와 같은 고통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훨씬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

## II. 역사적 배경

### A. 총론

11. 일본군들에게 현지에서 매춘을 제공하는 소위 “위안소”의 설립은 상해에서 중국과 일본간에 적대감이 심화되어 가던 1932년 초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약 10년이 채 못되어 소위 “위안부”의 활용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는 일본이 점령한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그러했다. 최초의 군 성노예들은 일본 북큐슈 지역에서 온 조선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육군의 한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나가사키현 지사가 보냈다. 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매춘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의 점령 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12. 1937년 일본의 제국육군이 폭력적으로 남경을 점령했을 때, 일본 당국은 군대의 규율과 사기의 상태를 고려해야 했다. 이때 원래 1932년에 도입되었던 위안소 계획이 다시 등장했다. 상해 특수부대는 1937년 말까지 장사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군부대의 성접대를 목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여성들을 손에 넣었다.

13. 이 여성들과 소녀들은, 육군에 의해 직접 운영된, 상해와 남경 사이에 위치한 위안소에 고용되었다. 이 위안소는 훗날의 위안소들의 전형이 되었고, 이 위안소의 사진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규정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 군이 위안소를 직할운영한다는 이 위안소의 운영방식은, 이 현상이 더 확산되면서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는, 위안소의 기본적인 형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민간인들은 충분히 있었다. 육군이 이들에게 군인에 준하는 신분과 계급을 부여하였다. 군은 수송과 위안소의 전반적인 감독에 대한 책임을 계속 가졌으며, 위생과 전반적인 관리는 군의 책임이었다.

14. 전쟁이 계속되고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 성노예에 관한 수요도 증대되었다. 그래서 징집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었다. 그 중에는 동아시아의 다수의 지역에서, 특히 조선에서 사기와 폭력의 빈번한 이용이 포함되었다. 스스로 위안부였음을 밝힌 다수의 한국 출신 “위안부”의 증언은, 강제와 사기가 빈번하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상당한 숫자의 피해여성들(대부분 한국 출신이다)은 증언을 통해, 자신들의 징집에 책임이 있는 여러 업자와 현지 협력자가 일삼은 사기와 감언에 대해 말하고 있다.

15. 1932년(정확하게는 1938년임 - 필자)에 통과되었지만 전쟁 말기까지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었던 일본 정부의 국가총동원법이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전쟁수행에 복무하도록 동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겉으로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기타 전쟁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본군을 보조하는 전쟁관련 업무를 담당할 여성들을 손에 넣기 위한 제도로써 여자정신대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구실에 많은 여성들이 기만당해 군 성노예가 되었고, 정신대가 매춘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6. 결국, 일본인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강제라는 방법으로 군의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보다 많은 여성들을 조달할 수 있었다. 많은 수의 여성희생자들은 딸의 납치를 막으려고 했던 가족들에게 자행된 폭력에 대해 증언한다. 어떤 경우에는 군인들이 강제로 끌고가기 전에 그네들의 부모 앞에서 강간을 자행하기도 했다. 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여복실이라는 희생자는 다른 많은 소녀들처럼 집에서 붙잡혔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끌고 가는 것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

17. 위안소의 지리적 위치는 전쟁이 진행된 경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소들은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었던 듯하다. 한편 “위안부”들에 대한 착취는 심지어 일본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이곳에서는 공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군데 위안소가 세워졌다.

18.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위안소는 중국·대만·보르네오·필리핀·태평양의 많은 섬들·싱가포르·말라야·미얀마·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안소라는 제도의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었던 친척이나 친지들 또는 위안소의 운영 초기부터 그 전모를 기억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19. 위안소의 사진들과 심지어 여러 정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위안부” 자신들의 사진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일본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위안소의 규정에 관한 많은 다양한 기록들도 있다. 징집 방법을 증명할 만한 것을 담고 있는 기록은 거의 없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부터 남아 있는 자료들로 널리 증명되고 있다. 일본군은 단순히 하나의 유흥시설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매춘 제도의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상해와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및 중국의 다른 지역들과 필리핀에 있었던 위안소들을 위한 규칙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생에 대한 규칙·이용 시간·피임법·여성에 대한 요금·술과 무기의 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이 엿보인다.

20. 이러한 규칙들은 전후에 남은 문서들 중 가장 범죄의 성격이 짙은 것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본군이 위안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얼마만큼 위안소라는 기구의 모든 면에 군이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는지를 의심의 여지없이 드러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대가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린 위안소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설치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위안부”들이 제대로 대우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주의가 기울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술과 무기의 금지, 이용 시간의 규정, 적당한 요금, 기타 공정한 취급인 듯이 보여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려는 여러 시도들은 실제로 벌어진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실상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군 성노예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가 지녔던 기상천외한 비인간성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데에만 기여할 뿐이다. 이 제도 속에서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흔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속된 매춘에 몸을 내맡기도록 강제당했던 것이다.

21. 전쟁의 종식도 그때까지 사역되고 있었던 대부분의 “위안부”들을 구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퇴각하는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자신의 운명에 내맡겨졌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보면, 일본군이 하루밤 사이에 70명의 “위안부”들을 살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안부들이 진주하는 미군들에게 포로로 잡힐 경우 거추장스러운 존재나 당혹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2. 최전선에 배치되었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군인들과 함께 자살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로 군사작전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스스로 연명하도록 방치되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집으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으며 “적군”의 손에 의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였다. 많은 여성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돈도 거의 없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 중 그들이 “번” 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닐라의 경우와 같이, 소개(疏開)되었던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런 여건과 식량 부족 때문에 죽었다.

## B. 징 집

23.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와 전쟁기간 중의 군 성노예 징집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잔존하거나 공개된 실제의 징집 과정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징집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들은 피해자들 자신의 구술 증언에서 나온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삽화로 치부하여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본질적으로 사적이며, 따라서 민간인이 운영한 매춘이라는 제도에 정부를 연루시키려고 꾸며낸 것으로 치부하여 거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징집 방법이나 여러 차원에서 군과 정부가 명백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동남아시아의 극히 다양한 지역 출신의 여성들의 설명이 일관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군과 정부의 공식적인 관여범위에 대하여 그렇듯 유사한 이야기를 지어냈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전혀 찬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24. 일본군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던 최초의 위안소는 1932년 상해에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에 대한 공식적인 관여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 상해 침공작전의 지휘관 중 한 명인 오카무라 야스지 중장은 자신이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 설립의 제안자였음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백했다. 당시 일본군이 강간 사건을 대단히 많이 일으켜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가사키현의 지사가 일본 내 조선인 사회에서 많은 수의 조선인 여성들을 상해로 보내도록 했다.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이송되었다는 사실은 군뿐만 아니라 내무성도 이 문제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내무성은 현의 지사들과 훗날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데 군과 협조하여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찰을 관장했기 때문이다.

25. 1937년 남경 강간 이후 일본인들에게는 군의 규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위안소 설치” 계획이 다시 등장했다. 당시 기타큐슈의 동일한 지역으로 중개인들이 파견되었는데, 유곽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 소녀들에게 걸으려는 군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는 돈 잘 버는 직업을 소개한다는 속임수를 동원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러한 일 대신에 상해와 남경 사이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군 성노예로서 일하게 되었으며, 이곳이 장래의 위안소의 원형이 되었다.

26. 전쟁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군은 이 일에서 손을 떼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민간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군요원들이 요청을 했거나 자기주도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이들이었다. 군이 매춘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고, 민간업자의 시설이 군을 위해 더 “어울린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집정의 실행에서 관리들의 책임이 점차로 늘어났다. 물론 민간업자들이 관련된 정도와 위안소 설립을 시작하는 일에 실제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양했다. 일본 당국은 최근까지도 강제징집과 속임수에 관해 자신들이 수행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징집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군 성노예로 삼은 여성들을 확보한 과정에 대한 정보는 주로 피해자들의 설명에서 나온 것이다.

27.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들은 전 “위안부”의 이야기 속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며, 납득이 갈만큼 분명한 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세가지 유형의 징집방법이 확인된다. 이미 매춘부였으며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한 경우, 식당이나 군인을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는 보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속임수로 여성들을 모집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여성 납치 방법인데 이것은 일본 점령하의 국가들에서 행해진 노예사냥과 같은 것이었다.

28. 여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군을 위해 일하는 민간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협조하여 일하고 있던 조선의 순사들도 마을로 와서 보수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며 처녀들을 속이곤 했다. 1942년 이전의 수년간은 조선의 순사들이 마을에 와서 “여자정신대”를 모집했다. 이것은 곧 이 과정이 일본 당국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과정이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소녀들의 “자원자” 추천이 실패하면, 헌병대가 그 원인 조사에 나섰다. 사실 “여자정신대”는 일본군이 조선 내의 지방 친일파들과 순사들을 이용하여 지역의 소녀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거짓 명목으로 “전쟁 노력에 동참”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29. 그래도 여성들이 모자랄 경우, 일본군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무력과 사냥을 일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딸의 납치를 막으려는 가족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1938년에 통과되었으나 1942년 이후 한국인들을 징집하는 데에만 이용되었던 국가총동원법의 시행 강화로 인해 가능했다. 다수의 위안부피해자들은 징집과정에서 폭력과 강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전시 중에 저질러진 인간사냥의 실행자이기도 했던 요시다 세이지는, 자신의 책에서, 국가총동원법의 일부분인 노무보국회에서 다른 조선인과 함께 1천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위안부”로 징집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30. 문서화된 자료들은 관리들과 지주들의 딸들은 징집에서 제외되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이 가족들이 지역 주민들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잡혀간 소녀들은 아주 어렸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14세에서 18세로, 학교 제도 역시 이 소녀들을 징집하는데 악용되었다. 현재 군 성노예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윤정옥 교수의 경우는 다행히도 부모의 배려로 학교에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같은 방법이 성병에 감염되지 않은 취학연령의 처녀들을 징집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31. 그들의 어린 나이와 순진함 때문에, 소녀들은 그들에게 제공된다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강제 이송에 대해 항의할 수도 없었으며, 많은 경우 그들은 매춘이나 성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던 학교 선생님들과 순사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이 징집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의해 더 가중되었다. 더욱이 매춘에 붙어 다니는 오명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정신대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다른 소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무시무시한 경험들을 숨기느라고 고심하며 사회에 재통합되었다.

### C. 위안소 상태

32. 전 “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일본군의 노예로 살았던 상황은 아주 끔찍했었다고 한다. 그들의 숙박과 전반적인 처우의 질은 장소에 따라 달랐으나,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들은 고통스럽고 잔혹했던 자신들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위안소 자체는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진주하는 일본군들이 점거한 건물인 경우도 있었고 “위안부”의 수용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군인들이 지은 임시 구조물인 경우도 있었다. 전방에서 위안소는 대체로 텐트이거나 임시 목조 오두막이었다.

33. 위안소는 주로 가시철조망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철저하게 차단, 감시되었다. “위안부”들의 동태는 가까이서 감시되었고 제한을 받았다. 많은 여성들은 절대로 병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의 정해진 시간에는 밖으로 걸어다닐 수 있었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거나 어떤 경우에는 영화를 보러 가끔씩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이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탈출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로 불가능했다.

34. 위안소는 일반적으로 일층 또는 이층짜리 건물로 밑에는 식당이나 접수대가 있었다. 여자들의 방은 주로 위층이나 뒤쪽에 위치했고, 뒤틀리고 협소한 침실로 약 0.9m× 1.5m 넓이의 침대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그런 조건 속에서 “위안부”들은 매일 60명에서 70명의 남자들을 받아야 했다. 어떤 전방에서는 여성들이 마루 위에 매트리스만 깔고 자야 했으므로 무시무시한 냉기와 습기에 노출되었다. 방들은 많은 경우 다다미나 명석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차폐물들이 마루바닥까지 닿지 않았으므로 방과 방 사이에 소리가 모두 들렸다.

35. 전형적인 위안소는 민간업자에 의해 관리되었고, 여자들은 일본인이나, 때로는 조선인 여성들이 관리했다. 그들의 건강 검진은 군의관들이 했으나, 많은 위안부들의 기억으로는, 그들의 정기 검진은 단지 성병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군인들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담배불로 지진 상처, 멍, 총칼에 의한 자상, 부러진 뼈 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더욱이 이 여성들의 휴식시간은 거의 없었다. 현재 남아 있는 다수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시간도 아무 때나 찾아오거나 오래 머무는 장교들에 의해 흔히 무시되곤 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여성들은 다음 손님이 오기 전에 씻을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36. 음식과 옷가지는 군에서 제공했다. 그러나 전 “위안부”들 중 몇 사람은 오랫동안 음식이 항상 부족했다고 불만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그들의 “봉사”의 대가로 돈을 지불 받도록 되어있었고, 돈 대신에 받은 군표를 모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조금이나마 “번 돈”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은 극히 적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면 돈을 모아서 자신이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작은 희망도 일본군이 퇴각한 이후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37. 많은 전 군 성노예들의 증언에는 성적 학대에 의한 뿌리 깊고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 외에도 노예 상태에서 받은 고통스러움과 잔혹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자유가 없었고, 군인들에 의해 폭력적이고 야만스럽게 대우를 받았으며, 위안소 운영자와 군의관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전방에 가까이 있었던 이들은 공격과 폭격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 또한 위안소를 빈번하게 출입하던 군인들을 더욱 잔인하고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38. 또한 성병과 임신에 대한 항상적인 공포가 있었다. 대다수의 “위안부”들은 성병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이들에게는 회복기가 주어졌으나, 다른 때에는 심지어, 생리 중에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한 여성 피해자는 특별보고관에게 군 성노예로 일할 때 여러 차례 성병에 감염되었던 탓에 전쟁 후 정신박약아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여성 피해자들이 느꼈던 깊은 수치심과 함께 그들은 자살하거나 탈출을 기도하였는데, 그 같은 시도의 실패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9. 역사적 자료들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은, 서울과 도쿄 방문 중 역사학자들을 만나서 위안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군 성노예의 목적으로 여성들이 어떻게 징집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에 관한 정보들을 요청했다.

40. 특별보고관은 도쿄 치바대학의 하타 이쿠히코 박사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역사연구들, 특히 제주도에서의 “위안부”들의 참상을 기술하고 있는 요시다 세이지의 책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에 주목했다. 하타 박사는 설명하기를 자신이 1991 / 92년에 증거 수집을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했었는데, “위안부 범죄”의 주범은 사실상 조선의 유지들이거나 포주 그리고 심지어 소녀들의 부모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는 처녀들의 부모들도 자기네 딸을 동원해 가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타 박사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위안소를 위해 조선인 여성을 징집한 두 가지 모델을 특별보고관에게 제시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조선인 부모들과, 조선인 이장들 그리고 조선인 중개인들, 말하자면 민간인들이 군 성노예의 모집책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타 박사는 또한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계약 관계에 있었으며 평균적인 군인 월급(15 - 20엔)보다 110배 이상을 (1000엔 - 2000엔)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41. 특별보고관은 또한 도쿄 주오(中央)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 역사학 교수도 만났다. 그는 조선인 “위안부” 모집을 위한 명령이나 규정들이 일본군 당국에 의해 또는 일본군의 승인 아래에 시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본 제국군대의 문서 사본들을 특별보고관에게 제공했다. 요시미 교수는 또한 특별보고관에게 원본문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 주었는데, 그의 주장은 사단이나 연대의 후방참모나 부관이 파견군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헌병을 통해 점령지의 이장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에게 명령을 내려, 군 성노예로 일할 지역의 여성들을 징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42. 위안소 설립 과정에서 일본 제국군대의 명백한 참여와 책임성을 예증하기 위해 요시미 박사는 여러 가지 문서들에 언급했다. 그 중에서 특별보고관은, 일본육군의 광동 주둔 제21군에 관한 진중일지(1939년 4월 11일 - 21일)를 예로 들고자 한다. 여기에는 군장교와 병사들을 위한 군대 매춘굴이 군 통제 하에 운영되었고, 약 1,000명의 “위안부”들이 10만명의 그 지역 군인들을 상대했다고 되어있다. 특별보고관이 전달받은 유사한 다른 문서들에서도 육군성의 지시를 근거로 하여 “위안소”에 대한 엄격한 통제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체계는 성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 규제와 같은 사항들을 다루고 있었다.

43. 또한 특별보고관은 성노예를 징집하는 또 다른 잘 알려진 수법으로 각 파견군이 조선으로 상인들을 보내어 헌병과 경찰의 협조나 지원을 받아 군 성노예로 조선인 여성들을 모으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 상인들은 주로 군본부가 지명했거나 또는 사단이나 여단, 연대가 직접 지명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시미 교수는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가 모든 공식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며, 공식문서들이 방위청이나 법무성, 노동성, 후생성, 대장성의 공식 문서보관소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집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44.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특별보고관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인 1995년에 진상을 조사하는 일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며, 전쟁 중의 군 성노예와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하는 소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I. 특별보고관의 조사방법 및 활동

45. 특별보고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방대한 정보와 문서들을 정부 및 민간 조직들로부터 받았다. 여기에는 이 사실 규명 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자세히 연구되었던 여성 피해자들의 문서화된 증언들도 있었다. 이 분야에 관련된 임무의 주요 목적은 이미 있는 자료들을 입증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인터뷰하고, 그 완전한 정보들을 근거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 상황 및 그 원인과 결과를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개선시키기 위한 건의안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46. 이 임무 수행 기간 중, 특별보고관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현재의 일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구제를 제안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했다.

47. 평양 (1995. 7. 15 - 18) : 인권센타 대표단은 방문 중 김영남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 외교부 고위 관리들, NGO와 학계, 언론계의 대표들로부터 자료와 문서들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또한 4명의 군 성노예 피해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48. 서울 (1995. 7. 18 - 22) :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 중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영접을 받았으며, 또한 외무부와 정무 2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학자들, 의회 및 여러 민간기구 대표들과도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13명의 전 “위안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 중 9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49. 도쿄 (1995. 7. 22 - 27) : 특별보고관은 일본 방문중 이가라시 코조 내각관방장관을 만났으며, 또 총리부, 외무성, 법무성의 고위관리와 국회의원과도 만났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NGO와 여성단체의 대표와도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제일 전 조선인 “위안부” 한 명과 일본 제국군대의 병사였던 사람의 증언을 들었다.

50. 특별보고관은 조사활동 중 만났던 주요 인물의 명단을 이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51.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일본 정부의 의견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향후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가 특별보고관이 만날 수 있었던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 즉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네덜란드의 여타

모든 전 “위안부”들을 대변하여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들의 증언은, 자신들의 존엄성의 회복을 요구하면서, 50년 전 자신들에게 자행되었던 만행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생존 여성피해자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 IV. 증언

52. 우선, 특별보고관은, 그것이 분명 그들의 삶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되새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증언을 특별보고관에게 이야기 해주었던 모든 여성 피해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엄청난 정서적 긴장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준 이 여성들과의 만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53. 이 보고서의 제한된 분량으로 인해, 특별보고관이 세 나라에서 들었던 16명의 증언 중 몇 가지만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그들의 모든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로 인하여 특별보고관은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증언들은 군 성노예라는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예증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별된 것들이며,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군 성노예제가 일본 제국 군대 지도자들에 의해, 그들이 알고 있었으며 체계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다는 믿음에 도달하게 하였다.

54. 현재 74세인 정옥선의 증언은 일본 제국군대의 병사들에 의한 성폭행과 일상적인 강간에 더하여 특별히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잔혹하고 잔인한 처우를 잘 나타내고 있다.

“나는 1920년 12월 28일 조선 북부의 함경남도 풍산군 파발리에서 태어났다.

내가 13살 되던 6월 어느 날, 나는 밭에서 일하는 부모님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물을 길러 마을의 우물가로 갔다. 그곳에 한 일본군이 갑자기 나타나 나를 끌고 갔다. 그래서 나의 부모들은 자기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나는 트럭에 실려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 곳에서 여러 명의 경찰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내 입속에 양말을 틀어넣고 나를 계속 강간했다. 내가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우두머리가 내 왼쪽 눈을 때렸다. 그 날 나는 내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약 열흘 후, 나는 혜산시의 일본 주둔군 막사로 끌려갔다. 그 곳에는 약 4백명의 나와 같은 조선인 어린 소녀들이 있었고 우리는 매일 성노예로 5천명의 일본군 -

하루에 40명에 달하는 남자들을 상대했다. 매번 나는 반항했고, 그들은 나를 때리거나 내 입속에 텅마조각을 틀어넣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항을 그칠 때까지 내 음부에 성냥개비를 대었고 음부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조선인 소녀가 한번은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매일 40명씩의 남자들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항했다. 그녀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그녀를 처벌하기 위해, 일본군 중대장인 야마모토는 그녀를 칼로 치라고 명령했다. 우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손과 다리를 묶어서 못이 박혀있는 판 위에서 그녀를 굴렸다. 못들이 그녀의 피와 살점들로 뒤덮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녀의 목을 잘랐다. 다른 일본인, 야마모토는 ‘너희들을 죽이는 것은 개를 죽이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조선년들이 못 먹어서 울고 있으니 이 인육을 끓여서 먹게 해주라’고 말했다.

한 조선인 소녀가 너무 자주 강간을 당해서 성병에 걸렸다. 그 결과 50명의 일본군인들이 성병에 감염되었다. 병의 전염을 막고 그 조선인 소녀를 ‘소독’하기 위해 그들은 뜨거운 쇠막대기를 그녀의 음부에 찔러 넣었다.

한번은 우리들 중 40명을 트럭에 태워서 멀리 물과 뱀이 차있는 웅덩이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소녀들 몇 명을 때리고 물 속으로 밀어 넣고 흙을 덮어서 살아있는 채로 매장했다.

아마도 그 주둔군 막사에 있던 소녀들 중 반 이상이 살해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두 번 도망을 시도했지만, 두 번 모두 며칠 후 우리는 잡히고 말았다. 우리는 더욱 심하게 고문을 당했고 나는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직까지 그 흉터들이 남아 있다. 그들은 또한 내 입안과 가슴, 배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겼다. 나는 기절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산자락에 버려져 있었다. 아마도 죽은 것으로 알고 버렸을 것이다. 나와 두 명의 소녀들 중, 국혜와 나만 살아남았다. 그 산에 살고 있던 어느 50대의 남자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우리가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나는 5년간 일본군 성노예로 살다가 18세에 상처 투성이에 불임여성이 되고 언어장애 상태로 조선으로 돌아왔다.”

55. 77세인 황소균의 증언은 많은 젊은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몰아넣었던 징집과정의 속임수 방법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는 1918년 11월 28일 하루벌이 노동자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우리는 평양시 강동군 대리 노동자 지역에서 살았다.

1936년 내가 17살때, 마을 이장이 우리집에 와서 공장에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집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보수 좋은 일자리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약 20명의 다른 조선인 소녀들이 태워져 있는 일본 트럭에 실려서 기차역으로 보내졌다. 그 곳에서 우리는 기차에 태워지고, 다시 트럭에 태워져서는 며칠을 달려서 중국의 목단강 강가의 큰 집에 도착했다. 나는 그것이 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곧 그곳에는 공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각의 소녀들은 모두 잠잘 짚더미 하나씩이 있는 작은 방에 배치되었고, 그 방의 문에는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이들을 기다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이 칼을 차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내말에 복종할테냐, 말테냐?’ 그리고는 내 머리채를 끌고는 바닥에 나를 팽개치고는 나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했다. 그는 나를 강간했다. 그가 나가자, 밖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20-30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그들은 모두 나를 강간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15명에서 20명의 남자들에게 당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의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병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살해되어서 모르는 장소에 매장되었다. 어느 날 내 옆 칸으로 한 새로 온 소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저항하려고 했고 그들 중 한 명의 팔을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당으로 끌려가서 우리들 모두 앞에서 칼로 머리가 찢리고 몸뚱이도 조각조각 찢렸다.”

56. 한국 영등포구 등촌동에 사는 73세인 황금주의 증언은 군이 운영했던 위안소의 규칙들을 알려주고 있다.

“나는 노동자로 징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17세 때, 마을 일본인 지도자의 부인이 모든 결혼하지 않은 조선인 소녀들은 일본군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나는 3년간 그곳에서 일했으며, 마침내 어느 날 일본군 병사를 따라 그의 텐트에 따라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저항했다. 나는 아직까지 처녀였다. 그는 내 치마를 찢고 칼이 꽂혀있는 총으로 내 속옷을 찢어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기절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담요에 덮여져 있었으나 사방이 피투성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첫해 동안은, 다른 조선인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계급의 장교들을 상대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리고 우리들이 점점 더 ‘헌 것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낮은 계급의 군인들을 상대하게 되었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 병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행방불명 되었다. 그리는 또 '606 주사'라는 것을 맞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또는 임신이 되었으면 유산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옷을 받았고, 떡 조금과 물뿐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했다. 나는 나의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5년 동안 '위안부'로 일했지만, 나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나는 병에 너무 여러번 감염되어서 장을 거의 드러냈고,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 한번도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다. 나는 우유나 과일 주스를 보면 구역질이 나고 마시지를 못한다. 그것들은 그들이 내게 하게 했던 그 많은 더러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57. 다른 생존자인 황소균은 7년간 군사적 성노예로 있다가 1943년 “위안소”를 탈출할 수 있었다. 그후 39세가 되어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가족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심리적, 육체적 상처들과 부인병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58. 또다른 생존자인 황금주는, 중국 길림의 위안소에 온 첫날 일본 군인으로부터 그녀가 복종해야 할 명령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특별보고관에게 말했다. 첫째, 천황의 명령, 둘째, 일본 정부의 명령, 셋째,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중대의 명령, 넷째, 그 중대 밑의 소대의 명령, 다섯째, 그녀가 서비스하고 있는 텐트 주인인 자신의 명령이었다. 다른 생존자인 한국의 김복선은 자신의 성노예 생활이 군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하사관들을 상대해야 했고, 9시를 넘어서 밤에는 상관들을 상대해야 했다. 모든 여성들에게는 군인들이 성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돔이 지급되었으나, 대부분의 군인들은 콘돔 사용을 거부했다.

59. 이 같은 진술들은 특별보고관이 받았던 문헌자료들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고, 특별보고관은 결국 군 성노예제는 군과 민간 지휘체계의 명령에 따라 일본 제국군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립되었고 엄격하게 통제되었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

60. 특별보고관은 또한 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증언에서 언급했던 상처와 흉터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조흥옥 박사를 특별보고관이 만났을 때, 그 의사는 이 여성들은 여러 해 동안 날마다 수차례씩에 걸친 강간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대부분의 생애동안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늘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더 나아가서 조 박사는 이 여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확연한 신체적 상처에 더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평생 동안 그들을 고문하여 왔는데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또한 많은 여성들이 불면증과 악몽, 고혈압, 신경쇠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증언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생식기관과 비뇨기의 성병 감염으로 인해 불임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61. 특별보고관은 증언을 청취하는 것 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관련되어 있는 개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코자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어떤 배상조치를 원하고 있는가와 일본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국민기금 방식에 의한 해결책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와 특히 일본 정부 측에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전 “위안부”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상세히 반영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이 제기했던 질문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 “위안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a) 일본 정부는 모든 생존하는 여성들 각 개인에게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해 여성들은 정부를 통하여 전인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피해 여성들은 대다수가 모든 생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사과 서신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무라야마 총리의 재임시에 이루어진 사과는 그의 진술이 일본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으므로 충분히 신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b) 일본 정부는 약 이십만명의 조선인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동원하고, 일본 제국군대가 이용하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한 것이 일본 정부와 군 지휘계통에 의해서 혹은 묵인 하에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c) 일본 정부는 성노예를 목적으로 하여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이자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평화에 반한 범죄일 뿐 아니라 노예제라고 하는 범죄와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의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d)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도덕적이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e) 일본 정부는 생존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 재원에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본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개별적인 배상 청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제안되었다.

62. 배상금 지불과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은 배상금의 액수는 그 상징적 의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에게 특정한 배상액수를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63. 더 나아가 많은 여성들은 일본 정부가 특히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민간재원으로 모금한 국민기금을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관련 피해당사자들은 이 기금이 일본 정부가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고 있다.

64. 이와 함께 전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a)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 조사는 이 문제에 관해 일본에 아직 남아 있는 모든 공식적인 문서 및 자료들의 공개, 특히 정부 공문서고의 문서 및 자료를 공개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b) 일본의 역사책과 교과과정을 개정하여 조사에서 드러나게 될 역사적 사실을 반영할 것.

(c) 일본 국내법의 틀 안에서, 군 성노예의 동원과 군 성노예를 제도화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처벌할 것.

65. 특별보고관은 모든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적인 추진주체인 특별보고관과 유엔 측에 국제적인 압력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러 기회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에 호소하는 방법이 거론되었다.

##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66. 인권센타팀은 특별보고관을 대신하여, 일본 제국군대가 성노예로 조선인 여성들을 징집했던 문제에 관한 동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일본 정부 측에 동 정부의 견해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다.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 법적 책임의 토대 위에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과함으로써 “수치스러운 과거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청산”하고, 생존하는 여성 피해자들 각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위 “위안부”라는 제도 수립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국내법에 따라 밝혀내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68.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법적 책임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평양 사회과학원 산하 법학연구소 소장인 정남영 박사는 국제법의 견지에서 일본의 책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법 해석의 내용을 설명했다.

69. 첫째로, 이십만명의 조선인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강압적으로 징집하고, 그들을 극심하게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후에 그들 대부분을 살해한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의 조선 합병은 합법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선에 일본이 주둔한 것은 군사적인 점령상태를 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선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압적으로 징집한 것은 피점령지의 민간인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국제 인도법상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로, “위안부”에 관련된 일체의 계획을 수립한 것, 특히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징집하여 매춘을 강요한 것은 1925년에 일본이 비준한 1921년의 부녀자 및 아동의 매매금지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0. 셋째로 “위안부”의 경우 군 성노예제는, 당시의 국제적인 관습법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1926년의 노예제협약(Slavery Convention)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성노예 행위는 또한 1948년의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the 1948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 협약은 1948년 이전에도 국제적인 관습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규범들을 기술한 것이다 -에 따른다면 집단살해 행위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들었다. 정남영 박사는, 일본이 한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을 파괴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즉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고 교묘하게 집단적 삶의 조건에 해를 가하여 물리적 파괴를 결과하고 집단 내에서 출산을 방해할 것을 의도하는 조치들을 부과한 것인데, 이는 곧 집단살해협약 제2조에 따르면 집단학살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들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서와 같은 어떠한 외교적 관계도 수립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위안부” 문제 외에도 두 정부 사이에는 강제노동문제 등과 같은 다른 주요한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에 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종전 시에 이루어진 다른 어떤 국제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72.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문서고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바로 이러한 문서들에 의거하여 일본이 “위안부”라는 제도 수립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 일본 역사책과 교과과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73.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배상금액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액수 혹은 추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시받지 못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고위 관리들은 생존하는 몇 명의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의 결과로 살해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댓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생존하는 개별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가 배상금 지불보다도 훨씬 더 상징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4. 마지막으로 조사팀이 방문 중 만났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학자들과 언론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국민 기금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이 기금은 “국가적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 내지는 책략”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이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풀이 언급하였다. 일본 정부가 기금을 설치하고, 생존하는 피해자들에게 “속죄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을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이 기금의 즉각적인 철회가 요청되었다.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졌던 모든 회의에서, 특별보고관과 유엔이 관련 정부들간의 중재자로서,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시인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의하도록 권고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다.

76. 결론적으로,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사회부문들에서 군성노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가 표명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 VI.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77. 특별보고관은 생존하는 여성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많은 수의 전 “위안부”를 대표하는 NGO들로 구성되어 극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트워크와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78. 일본과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랐다. 이것은 전쟁 중 일본군의 조선 점령 문제에서 야기된 요구사항들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1965년의 조약은 단지 재산에 대한 청구만을 규정하는 것이었지 개인적인 손해를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리들에게 1965년 조약이 그들의 견해로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배상까지 충분히 망라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공노명 외무부 장관은 한일 두 정부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1965년 조약을 근거로 하여, 전쟁 중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군 성노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1993년 3월에 나온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기사에 따르면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다.

79. 일본 정부의 법적 의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일본 정부가 50년 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배상할 법적 책임이 실제로 있는가 그리고 종전 후에 맺어진 조약이나 국제 조약들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개인들이 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민사 법원에 개개인이 소송을 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었다.

80. 이와 관련해서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물질적 배상요구는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정부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생존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 그룹들과 NGO의 활동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 “위안부”들을 보호하고 무료 의료지원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법”을 1993년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보고관은 만족스럽게 주목했다.

81. 특별보고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현존하는 문서와 사실들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2. 또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 여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공개 사과, 예를 들어 일본 수상이 모든 생존하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개인 서신을 보내는 방법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83. 국민 기금의 설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외무부 장관은 본 특별보고관에게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자들의 바람을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NGO의 활동들을 지지했고, 그들의 요구가 또한 관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84. 대한민국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다소 조심스런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의 다른 부문들, 즉 정치인들과 학자들, NGO의 대표들, 그리고 여성 피해자 자신들은 훨씬 더 강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5.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의원들은 특별보고관에게, 국회외무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군 성노예와 관련하여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배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도록 권고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역사 교과서 개정 및 모든 피해 여성들을 위한 추모 동상 건립도 요구하였다.

86. 아울러,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문제로 활동하는 여성 단체들과 NGO들의 많은 대표들을 만나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회에서는 특별보고관에게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했다.

87. 이러한 민간기구들의 입장은 생존하는 피해자 당사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들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인함으로써 “모든 전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것,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할 것, 일본 정부가 생존하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본의 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인 배상 청구 소송을 처리하도록 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88. 특별보고관은 또한 NGO의 대표들에게 국민 기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들에게도 역시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민간 창구에 모금을 요청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에 대한 무조건적 철회를 요구했다. 보상을 위하여 개인 및 민간 부문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이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특별보고관은 알게 되었다.

89. 더 나아가 국제적인 추진주체인 유엔은 국제적 압력을 통하여,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적합한 해결을 만들어 낼 것을 반복해서 요청받았다.

90. 흥미롭게도 또한 1995년 3월 한국노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노예로서의 그들의 “노동”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ILO의 의사소통기제에 강제노동에 근거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 VII. 일본 정부의 입장

91. 일반적으로 국제법 아래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현대 국제법, 특히 인도에 관한 국제법 분야에서는 그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92. 특별보고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는 전 “위안부”들과 그들을 대신하여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특정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반대주장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을 특별보고관에게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구속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는 느끼지 않고 있으며 단지 도의적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성노예로 만들었던 여성들에 대하여 법적 의무와 도의적 의무를 모두 가진다고 믿는다.

93. 1994년 8월 일본 정부는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위안부’의 동원과 수송에 대해서도 시인했으며, 또한 군인들이 피해여성들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징집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더 나아가 “이것은 . . .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문제이다”라고 진술했다.

94. 대한민국과 일본 방문 중 NGO들과 학자들이 제공한 문서를 통해 볼 때, 일본

제국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위안소 설치와, 위안소의 이용과 운영, 그리고 위안소의 통제와 규제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했다. 일본 제국군대 장교들이 위안소에 관해 내린 명령들을 보여주는 상세한 문서가 제공되었다. 위안부의 징집과 수송을 위해 전선의 장교가 특별요청한 것을 포함한 명령원문의 사본도 제공되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위안부”에 관해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문서가 공개되었다고 동 정부로부터 통고받았다.

95. 특별보고관은 위안소에 수용되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갔고, 일본 제국군대는 위안소들로 구성되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했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가 위안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이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96. 일본 정부는,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약과 다른 국제법 문서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점과 관련 특별보고관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S/25074) 내용을 일본 정부에게 주지시키고자 한다. 그 34번째 문단과 35번째 문단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무총장의 견해로는,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sine lege*) 원칙의 적용은, 특정 조약을 모든 국가가 아니라 몇몇 국가만 준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재판소가 의심할 여지없이 관습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제인도법의 규칙들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의심할 바 없이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인도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법의 일부는, 1949년 8월 12일의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과 1907년 10월 18일의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 제4협약 및 그 부속규칙, 1948년 12월 9일의 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45년 8월 8일의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무력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97. 특별보고관은 앞에서 언급한 사무총장의 견해대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의 특정한 부분들은 명백히 국제관습법의 일부이며, 국가는 특정 조약의 가맹국이 아니더라도 인도에 관한 국제법의 이 같은 원리들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98. 제네바 제4협약 제27조는 전시의 강간은 국제적 전쟁 범죄라는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 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929년 발효되었으나 일본은 비준하지는 않은 전쟁현장에서 군의 부상자 및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관한 제네바조약 제3조에서는, “전쟁 포로들은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여성들은 그들의 성에 따라 모든 배려를 받아야 한다 . . .”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99. 국제 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 c항과 도쿄 재판소 헌장 제5조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살해, 집단살해, 노예화, 추방 그리고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모든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100.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위원회가 제46 회기의 활동보고서가, “본 위원회는 전쟁범죄라는 범주는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한다. 이 범주는 1949년의 제네바 조약의 중대한 위반의 범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101. 1949년의 제네바조약이 그 조약의 시효 원칙 때문에 국제관습법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1929년 제네바조약은 일본이 가맹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1907년의 육전 법규 관례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자였다. 모든 교전국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 규칙은 적용될 수 없지만 (제2조), 이 조항들은 그 당시 통용되었던 국제관습법의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다. 헤이그규칙의 제46조는 국가에게 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가족의 명예란 가족 내의 여성들이 강간이라는 모욕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102. 일본 정부는 1904년의 추업부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과 1910년의 추업부 매매 금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및 부녀자 매매 금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을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21년 조약 제14조의 특권을 행사하여, 조선을 그 조약의 적용제외로 한다는 취지를 선언했다. 이것은 조선인이 아닌 모든 전 “위안부”들은 일본이 이 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일단 조선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 그러했듯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면, 이 조약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조선 여성들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 조약에 근거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조약은 그 당시 존재했던 국제관습법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03. 일본 정부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국제법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청구권 문제 해결 다루고 있는 여타 쌍무적 강화조약들과 국제 협정들에서 충족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협정들을 통해 일본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일본과 여기에서 언급된 협정의 당사국들간에는 배상 및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104. 역시 특별보고관에게 제공된 문서들에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의 제2조 1항이 “양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문제들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제2조 3항에서는 “타방 체결국의 관할 하에 있는 일방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에 관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총 5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고 지적한다.

105.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모든 청구권은 쌍무적인 협약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은 개별적인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6. 일본 정부는 또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a)항의 내용을 지적한다. 즉, “일본은 전쟁 중 일본에 의해 야기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경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모든 그러한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완벽하게 배상을 하고 동시에 그외의 여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 . .”

107. 국제법률가위원회는 1994년 발행한 “위안부”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언급한 조약들은 비인간적 처우에 관한 개개인의 청구권은 포함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청구권”이라는 용어는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용어는 합의된 의사록이나 의정서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서 비롯되는 개별적인 권리의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협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과 맺은 1965년 협정이 정부 측에 지불하는 손해배상에는 관련이 있지만, 피해를 겪은 개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08. 특별보고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쌍무적인 조약들 어떤 것도 인권 유린 일반이나 특히 군 성노예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체약국들의 “의도”에는 “위안부”들이 제기한 특정한 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약들은 일본에 의해 전쟁 중에 발생한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보고관의 결론은 이 조약들이 전 군 성노예들이 제기한 청구권을 포괄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국제인도법을 결과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109. 일본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문서들은, 국제법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조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110. 특별보고관의 견해는, 국제 인권 문서들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개인 권리의 사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제1조는 유엔의 목적의 하나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고 고취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문서들은 개인이 때때로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111. 일본 정부는 또한 국제 인권 기구들이 가해자들을 소송하여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국가의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불처벌 문제는 실체법적 문제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에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나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면을 한 적이 없다. 전쟁 범죄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소송은 국제법에 따라 여전히 가능하다.

112. 또한 군인들은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지휘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규칙과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들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13. 위에서 강조한 대로 살해, 집단살해, 노예화, 강제이송 그리고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저지른 여타 비인도적 행위들을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 규정한다. “위안부”의 경우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납치 및 조직적인 강간은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및 인도에 반한 범죄를 구성한다.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달려 있다. 시간의 지연과 정보의 부족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소추를

시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무이다.

114. 일본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국제법상 배상받을 권리가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보상으로서의 배상도 국가들 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115.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는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법률이 부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국가의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인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또한 그 제2조 3항에서 유효한 구제를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할 사법 및 행정, 혹은 입법당국 또는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며, 따라서 유효한 구제에 관한 개인의 권리는 국제적인 규범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16. 모든 인권 문서들 또한 국제 인권에 관한 법의 위반에 대한 유효한 구제책 문제를 다루고 있다. 권리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배상권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권을 가지는 것이 인정된다.

117. 국제법상으로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는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원칙이다. 특별보고관이 예비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호주프 공장(Chorzow Factory)의 사례는 조약의 위반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손해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법의 원칙을 확립했다.

118. 인권위원회는 또한 배상에 대한 개인의 권리 문제를 밝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1995/34 결의문에서 인권위원회는 소수집단의 차별 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중대한 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배상 및 재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 (E/CN.4/Sub. 2/1993/8, chap. IX)가 제시한 기본적 원칙 및 지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장려했다.

119. 그의 보고서 14번째 문단에서 동 특별보고관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결과로서, 개인과 집단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또한 기존의 국제법의 틀 안에서 유효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관해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미주인권조약, 유럽인권조약, 고문 등 금지조약,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관한 선언, 독립국가 내의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ILO 619호 조약, 어린이의 권리조약이 모두 동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다. 이 국제 문서들은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유효한 구제와 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120.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관련하여 제안된 기본 원칙과 지침에서 특별보고관은 “모든 국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는 국제법에 따라 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한다. 인권 존중을 보장할 의무에는 위반을 방지할 의무, 위반을 조사할 의무, 위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들에 대한 유효한 구제를 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121. 또한 제안된 원칙과 지침에는, 배상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희망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위반의 경중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보상, 재활, 속죄 및 재발방지 보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배상의 이런 형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원상회복(restitution)이란 인권을 유린당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상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 시민권, 거주지, 직업, 재산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다.

(b) 보상(compensation)은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 모든 경제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육체적 정신적 상해, 고통, 정서적 장애, 교육을 포함한 기회의 상실, 소득 및 소득능력의 상실, 적절한 의료 및 갱생을 위한 경비, 재산 및 비즈니스에 대한 손실, 명예와 존엄성의 손상, 구제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법적 또는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비용 등이다.

(c) 재활(rehabilitation)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 뿐만 아니라, 법적, 의학적, 심리적 기타의 다른 보호조치의 제공을 의미한다.

(d) 속죄 및 재발방지 보장(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은 지속되는 인권 유린의 중지를 포함하여, 사실 검증과 진실의 완전하고 공적인 공개, 사실의 공식적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사과,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및 조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122. 특별보고관은 배상은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필요하다면 직계 가족 또는 직접적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또한 개인들에게 배상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집단 청구를 제기하는 피해자 그룹에게 집단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어떤 시도도 소급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 측의 기본적인 주장은 인도에 관한 국제법이 국제관습법의 일부라는 주장에 의해 대응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조 2항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24. 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년이나 지났다는 주장 역시 부적절하다. 형법과 형사정책과 형사관행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시효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그의 보고서에서 원상회복 권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떠한 유효한 구제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시효에 종속되지 않는다.”

### VIII. 도의적 책임

125.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많은 성명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하다. 특별보고관은 이것이 환영할만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문서들에는 소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성명서와 탄원서가 포함되어 있다. 코노 요헤이 외상이 1993년 8월 4일 발표한 성명은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동원이 민간인에 의한 동원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군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성명은 나아가 많은 경우,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었으며, 위안소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26. 일본 정부는 “지역을 막론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치유될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표”했다. 그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같은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역사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마음 속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127. 또한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회담 결과, 일본 정부가 특별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 군인들과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가 주최한 심층 청문회에 참석했다. 경찰청 및 방위청을 포함한 주요 정부 기관들도 이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128. 1992년 7월 5일 일본 정부는 그 시점까지 진행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서 역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되었다. 그 문서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당국의 요구에 따라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 문서는 “위안소는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당시의 말라야, 태국, 당시의 버마, 당시의 뉴기니아, 홍콩, 마카오, 그리고 당시의 프랑스로 인도차이나에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시설이 민간인 운영자들에 의해 운영된 경우라도 당시의 일본군은 시설 개업을 승인하고, 시설을 설치했으며, 운영 시간 및 요금, 시설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규정한 위안소 규칙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129. 그 문서는 또한 “이 여성들은 군대의 지속적인 통제 아래에서 군인들과 함께 이동하도록 강제당했으며,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을 견뎌야했다”고 적었다. 이 조사는 많은 경우 동원이 민간 운영자가 했지만 동원하는 사람들은 이 여성들을 “기만과 협박”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했다고 결론 맺고 있다. 이 조사는 더 나아가 관리들과 군관련 인사들이 직접 징집에 참여한 경우들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끝으로 이 조사는 일본군이 “위안부”의 수송을 승인하고 기획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적고 있다.

130. 일본 정부의 몇몇 인사들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을 표시했다. 1994년 8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심하게 훼손한 전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와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에 맞춰 아시아의 평화, 친선 및 교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아시아 역사 문헌 센터의 설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되었다. 그것은 또한 일본과 인근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와 대화를 증진시키는 교류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할 것이다. 이 계획은 특별히 “위안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총리의 “침략행위에 대한 깊은 유감”에 근거한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131. 마지막으로 이가라시 코조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총리의 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1995년 6월 1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50주년 문제를 위한 여당 프로젝트 팀의 토론 결과에 의거하여,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에 근거하여 국민 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부의 책임있는 관리들은 특별보고관에게 이 기금의 구체적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 기금의 주된 목적은 생존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a) 전 전시 성노예의 고통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보상”의 방편으로서 민간부문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

(b) 정부 및 다른 재원을 염출하여 전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복지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

(c) 이 기금사업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모든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할 것이다.

(d)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위안부”제도에 관한 역사 문헌들을 수집하는 것. 특별보고관은 이 문서와 근대 아시아 역사에 관한 다른 문서들이 계획중인 근대 일본-아시아 관계 센터에서 일반에게 전시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

(e)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이 끌려온 국가들에서의 인신매매와 매춘 등과 같은 현대형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분야에서 NGO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

132. 특별보고관은 이 기금을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모금을 하는 목적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1995년 6월 14일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이 기금의 설립은 일본 정부와 함께 일본 국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이 기금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와 지역들과 상호 이해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과거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부터 기금을 모으기로 결정한 이유이며, 정부는 5억엔 (약 570만 달러)를 출연하여 기금의 행정비로 충당하도록 지정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여성 피해자들의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다.

133. 일본 방문 이후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로부터 추가 자료를 접수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문서 작성 시점인 현재 주로 개인들로부터 기부금으로 약 1백만 달러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노동조합과 기업, 민간 기관의 모금사업 참여가 기대되며, 이 기금은 법인체이면서 비영리기구가 될 것이라고 들었다.

134. 이에 비추어 특별보고관은 이 기금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들의 운명에 대한 도의적 관심의 표현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여성들의 상황을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의 표명이며, 이 같은 사실은 특별히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기금조성을 바란다는 점에 반영되어 있다. 비록 특별보고관은 이 계획을 도의적 관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것은 국제법상 “위안부”들의 법적 청구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135.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개발기금의 여성 폭력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주목한다.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동참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 IX. 권고

136.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들과의 협력의 정신 속에서 본인의 위임사항을 수행하고 전시의 군 성노예라는 현상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들이라는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나와 토론 속에서 이미 일본 정부가 보여준 협조와, 일본제국군대가 저지른 군 성노예제도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생존한 여성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열린 자세와 적극성에 기대를 건다.

### A. 국가적 차원에서

137. 일본 정부는,

(a)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제국군대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제도가 국제법상의 일본의 의무에 위반된 것이라는 사실을 승인하고, 그 위반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b) 군 성노예제도의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소수집단의 차별방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 특별보고관에 의해 제시된 원칙에 따라,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극히 고령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특별한 행정적 심사회가 단기간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c)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 제국군대의 위안소 및 다른 관련된 활동에 관해, 일본 정부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문서 및 자료의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스스로 일본군 성노예였음을 밝혔고, 그렇게 입증된 여성 개개인에 대해, 서면에 의한 공적인 사죄를 해야 한다.

(e)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도록 교육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f)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부의 징집 및 위안소의 제도화에 관여한 범행자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처벌해야 한다.

## B. 국제적 차원에서

138.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은, 이들 문제를 국제연합 조직 내에서 계속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시도도 이루어져야 한다.

1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은, “위안부”에 대한 배상의 책임 및 지불에 관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40. 특별보고관은, 생존여성이 고령이라는 사실 및 1995년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50주년이라고 하는 사실에 유의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특히 위의 권고를 고려에 넣고, 위의 권고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별보고관은 종전 후 50년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고통을 겪었던 여성들의 존엄성을 이제는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